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1. 수정예산안 편성사유

○ 세입분야에서는

- 일반회계에서는 공동주택건립특별회계 전입금 271천원과 증액계상된 재원 조정특별교부금 280,000천원과 국·시비보조금의 추가·변경내시에 따라 감액된 국비보조금 12,100천원과 증액된 시비보조금 145,779천원 등 413,950천원의 재원으로 하여 수정편성하였음.
- 특별회계에서는 국·시비보조금의 추가·변경내시에 따라 의료보험기금특별회계에서 증액된 국고보조금 346,0385천원과 시비보조금 86,521천원 등 432,606천원을 재원으로 하여 수정편성하였음.

○ 세출분야에서는

- 선거관리위탁금 34,445천원 감액
- 재활용품 분리수거요령 홍보·지도 200천원 감액
- 지방국민운동사업지원 12,000천원 감액
- 노인교통비 보상 159,609천원 증액
- 무등노인복지회관 사랑의 식당 구료비 9,618천원 증액
- 사랑의 식당 운영비 9,618천원 증액
- 서창동 세하경로당 신축 50,000천원 신규
- 환경보전글짓기 모음집 발간(500부) 1,750천원 신규
- 운천저수지 공원조성계획 용역비 30,000천원 신규
- 농로포장 100,000천원 신규
- 농성1동 대원주택과 제일교회간 도로개설 100,000천원 증액
- 의료보호환자 진료비 432,606천원 증액 등 주로 당면현안사업투자 등에 주안점을 두고 세출예산안을 편성하였음

2. 추가경정예산의 규모

- '98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액 78,347,276천원보다 846,556천원이 증액(1.08%증액)된 79,193,832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 일반회계는 추경예산액 67,626,257천원보다 413,950천원이 증액(0.61%증액)된 68,037,207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 특별회계는 추경예산액 10,724,019천원보다 432,606천원이 증액((4.03% 증액)된 11,156,625천원으로 편성되었음.

3. 세입예산안 총괄

1) 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98 제1회 추경 예산 (안)	수 정		수정 예산안
		증 액	감 액	
계	67,623,257	413,950		68,037,207
보 통 세	10,385,240			10,385,240
목 적 세	1,422,660			1,422,660
지방세 과년도수입	130,000			130,000
재산임대수입	168,587			168,587
사용료 수입	154,410			15,410
수수료 수입	3,728,066			3,728,066
징수교부금수입	1,780,215			1,780,215
이 자 수 입	1,220,000			1,220,000
재산매각수입	129,720			129,720
이 월 금	6,267,324			6,267,324
부 담 금	600,000			600,000
잡 수 입	663,321	271		663,592
세 외 수입 과년도수입	100,000			100,000
조정교부금	24,882,000	280,000		25,162,000
국고보조금	8,444,641		12,100	8,432,541
시비보조금	7,686,073	145,779		7,831,852

2) 특별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98 제1회 추경 예산 안	수 정		수정 예산안
		증 액	삭 감	
계	10,724,019	432,606		11,156,625
경상적세외수입	2,035,433			2,035,433
임시적세외수입	4,307,481			4,307,481
국고보조금	3,100,146	346,085		3,446,231
시비보조금	1,280,959	86,521		1,367,480

4. 세출예산안 총괄

1) 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98 제1회 추경 예산안	수 정		수정예산안
		증액	삭감	
합 계	67,623,257	413,950		68,037,207
입법및선거관계	1,362,394		34,445	1,327,949
일반행정비	24,701,047		12,200	24,688,847
교육및문화	2,472,326			2,472,326
보건및생활환경개선	10,941,252	1,750		10,943,002
사회보장	15,797,041	228,845		16,025,886
주택및지역사회개발	921,548	30,000		951,548
농수산개발	485,554	100,000		585,554
지역경제개발	82,484			82,484
국토자원보존개발	7,769,331	100,000		7,869,331
교통관리	267,659			267,659
민방위관리	251,278			251,278
지방채상환	388,483			388,483
제지출금	741,955			741,955
예비비	823,868			1,440,905

2) 특별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98 제1회 추경 예산안	수 정		수정예산안
		증액	감액	
계	10,724,019	432,606		11,156,625
정상예산	127,272			127,272
사업예산	10,566,484	432,606		10,999,090
채무상환	-			-
예비비	30,263			30,263

5. 위원회소관별 수정예산안

(단위 : 천원)

구 분	'98 제1회 추경 예산안	수 정		수정예산안
		증액	감액	
계	78,347,272	846,556		79,193,832
운영위원회	927,396			927,396
기획총무위원회	31,696,986		46,645	31,650,341
사회도시위원회	45,722,894	893,201		46,616,095

6. 검토의견

- 이번 추경예산안 편성의 특색은 IMF체제 하에서 잇따른 기업도산과 장기간에 걸친 경기침체, 부동산거래의 위축 등으로 정부 의존재원의 감소와 지방세의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선심성·행사성 등 낭비성 예산과 절약 가능한 부분을 과감히 정리하여 절감된 예산과 고통분담의 일환으로 공무원의 처우개선비의 동결 및 기말수당 보수 삭감액 등을 투자재원으로 당면현안사업에 투자함으로써 위축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공공근로 및 취로사업 등으로 날로 늘어나는 실업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 봅니다.
- 이러한 맥락에서 보아 이번 추경예산의 경우 그 사유와 시기에 있어서는 적절하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는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몇 가지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세입분야입니다.

- 세수추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구세의 주종을 이루고 있는 재산세, 종토세 등 보유세가 안정적인 추세를 보이고 있어 약간의 증가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잇따른 기업도산과 장기간에 걸친 경기침체, 부동산거래의 위축 등으로 면허세나 사업소세 등은 감소가 불가피하다고 보여 집니다. 이러함에도 이번 제1회 추경에는 전혀 계상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금후 추경시 정리하겠다고 합니다. 이러한 발상은 추가경정예산제도의 본질에 반할 뿐만 아니라 건전재정운영의 원칙에도 반하는 것이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국가의 경기동향 및 지방의 경기동향 및 관내 사업체와 종업원수, 부도업체수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세수추계의 정확성을 기하여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 주식회사 금호타이어에 과해진 개발부담금의 향후 추경예산 반영에 대한 의견입니다. 주식회사 금호타이어는 지난 1월 10일 개발부담금을 납부하였으나 이번 추경안에는 전혀 세입예산에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현재 소송에 계류중으로 확정되지 않았으며 확정판결 이후 향후 추경예산에 반영하겠다는 것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법령에 의한 과세처분에 따라 징수되며, 개발부담금 등 과세처분은 당연무효가 아닌 한 일정한 쟁송제기 기간중에는 납부여부에 관계없이 다룰 수가 있기 때문에, 쟁송제기 기간을 도과하지 않는 한 과세처분에 의한 국세나 지방세는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이란

재정수요와 이에 충당하는 재원을 추정하여 작성하는 세입·세출의 예정적 계산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확정판결 이후 향후 추경예산에 반영하겠다는 것은 예산제도나 더 나아가 추경예산제도의 본질에도 반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둘째, 세출분야입니다.

○ 추경예산안에의 계상여부에 대한 의견입니다. 예년에 비하여 점차 개선되고 있긴 하지만 사항별 설명서 44쪽 복사기·컴퓨터 등 소모품 구입(1,440천원) 60쪽 98년판 연합연감구입(3,000천원), 82쪽 관리청사정비(5500천원), 88쪽 호적부 바인더 구입(800천원, 1997년 제1회 추경에도 동일금액으로 계상된 바 있음), 154쪽 도로변 잡초제거 제초재구입(1,000천원) 154쪽 노점상 야간단속급식비(750천원, 97년에는 본예산에 계상되었음) 등은 이번 추경예산안에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이러한 경비는 필수경상비로서 본예산 편성시 충분히 예측하여 계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에 계상하고 있는 것은 본예산 편성시 사업의 필요성을 충분히 알았 으면서도 본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추경예산안에 계상함으로써 본예산 편성시 타 사업의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까지 들며 건전재정운영원칙에도 위배되는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이 성립된 후의 여건변화로 본예산으로는 대처하기 곤란한 사유가 발생할 때 제한적으로 활용되어야 할 것이며, 본예산 편성시부터 추경편성을 전제로 하는 재정운용 방식은 지양되어야 합니다. 55쪽 광주·전남발전연구원 출연금(30,000천원)의 추경예산편성의 문제점입니다. 광주·전남발전연구원 출연금은 본예산의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예산을 다시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부활시킨 것으로 이러한 부활예산은 본래의 추경예산 편성사유에도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본예산 심의의 적정성을 흐리게 하는 것입니다. 기금을 출연해야만 하는 납득할 만한 근거를 제시하여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 신규사업에 대한 의견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계상된 신규사업은 약 80 개로서 큰 논란이 될만한 것은 없어 대부분은 그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주요신규사업 (예를들면 85쪽 구청사 장애자용 시설물 설치, 수정예산안의 경우 서창동 세하경로당 신축·운천저수지 공원조성계획 용역비)의 경우에는 중장기재정계획이나 주요업무계획과 연계성을 지녀야 하며 사업시행에 앞서 타당성 조사, 기본설계, 용지보상 등 필요한 사전

절차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감안하여야 할 것입니다.

- 획일적 예산절감에 대한 의견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공무원의 처우개선비 동결 및 보수삭감, 일반업무추진비(30%절감)·기관운영 특수활동비(30%절감) 등을 비롯한 자산취득비(20%절감)와 기타 경상경비(20%절감)를 정부의 절감계획 권고에 따라 획일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경직성 경비와 소모성 경비를 절감하겠다는 재정운용 정책의 의지를 가시적으로 인식시키는 긍정적 효과도 있지만, 지방재정의 자주성과 투자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당초예산의 세출예산 비목에서는 사업종류와 단가, 횟수, 개수 등을 고려하여 소요예산을 계상하고 있습니다만, 이번 추경에서는 사업개요나 경비내역 등에서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75쪽 자산취득비의 경우 노후 팩스 구입(2대) 300만원, 컴퓨터 책상구입(2대) 70만원, 기록렌즈구입(1대) 140만원, 법령CD구입 30만원 등 총540만원을 당초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만, 이번 추경의 경우 사업개요 및 경비내역 등에서 이러한 구체성과 개별성은 찾아볼 수 없고 정부의 절감계획 권고에 따라 일률적으로 절감하여 37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62만원을 삭감하고도 4가지 종류를 모두 구입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구입대수나 종류를 포기해야 하는 것인지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전자의 경우라면 이는 예산의 과다편성이라 할 수 있고, 후자의 경우라면 불용액의 발생을 예고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비단 이러한 사례는 여기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 하나에 그치지 않고 모든 부서의 이곳 저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추경예산 편성의 필요성과 긴급성하에서 이와 같은 예산편성의 불가피성을 인정해 줄 수 있다고 하겠지만, 우선순위가 낮고 매년 계속하여 불용되는 항목의 예산계상은 없는가 기존의 장비와 상호보완성이나 연관성이 가능하는가 등 기존의 각종 경비에 대한 효율성과 효과성을 전면 재검토하여 재원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 예산집행이 있었으면 합니다.